

AHA BLS Training Site 운영지침

1. 정의

AHA BLS Training Site(이하, BLS TS)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.

2. 신청과 지정

- 1) BLS TS를 신청 하고자 하는 기관은 BLS TS 신청서(대한심폐소생협회 양식)의 요건을 준수하여 BLS 위원회에 제출하며, BLS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.
- 2) BLS TS 신청 시 BLS TS Director 는 유효한 AHA BLS Instructor 로써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의 교육경력이 최소 2회 이상이어야 한다.
- 3) Director 와 Coordinator 는 교육기관에 재직중인 자여야 한다.
- 4) BLS TS Director는 Coordinator 를 겸할 수 있다. 겸하지 않은 경우에 Coordinator 는 비서를 포함할 수 있다.
- 5) BLS TS에 상주하는 AHA BLS Instructor가 최소 **3명** 이상이어야 한다. BLS TS 승인 후 상주인원이 미 충족되는 경우 상주하는 AHA BLS Instructor를 6개월 이내 배출해야 한다.

3. 관리 및 감독

Training Center(이하, TC)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이며 TC는 TS를 관리 및 감독한다.

4. 교육기관(Training Site) 운영

- 1) BLS TS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Director와 Coordinator 를 두어야 한다.
- 2) 교육기관의 명칭과 Director, Coordinator 변경 시 기관 최고 책임자(예: 병원장, 총장)의 변경 요청 공문과 재직증명서를 대한심폐소생협회로 발송한다. (단, Coordinator 변경은 TS Director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 형식도 가능하다)
- 3) 소속된 BLS Instructor를 관리한다.
- 4) 소속된 교육생을 관리한다.
- 5) 교육과정에서의 인력, 장비, 기구, 장소 기준은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고 BLS TS는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
- 6) 교육과정의 교육비, 강사비, 장비 등에 관련된 비용은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정하거나 청구하지 않으며, TS의 자체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.
- 7) 교육과정의 교육비 입금계좌는 법인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.

5. 소속 Instructor 관리

- 1) 소속 BLS Instructor는 자격이 유효해야 하며, 2년 동안 4회 이상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에 강사로 참여하여야 한다. 단, 아래의 세 가지에 해당된다면 KACPR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로 전환할 수 있다. (강사증 갱신일 기준 2019.11.01부터 적용)
 - (1) BLS Instructor Renewal자 중에서 BLS Provider 교육에 총 4회 이상 참여
 - (2) BLS Instructor Renewal자 중에서 BLS Provider와 KBLS Provider 교육을 합하여 총 4회 이상 참여

- 2) BLS TS는 소속 AHA BLS Instructor가 2년 동안 4회 이상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에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. 단, 군복무, 질병, 임신 및 육아,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기간은 최대 만 4년으로 한다.
- 3) 소속 AHA BLS Instructor에게 유효만료기간 3개월 전에 교육실적을 통보하여 자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.
- 4) BLS TS는 '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'을 위해 KACPR 일반인 심폐소생술 강사를 소속시킬 수 있다.
- 5) BLS TS는 BLS Instructor candidate에게 '소속 예정 TS Director 확인서'를 작성할 수 있으며, 반드시 BLS TS Director가 서명해야 한다.
- 6) 소속 AHA BLS Instructor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는 서면보고서를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제출해야 하며, 아래와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. 또한 제재 대상자는 TS Director, 교육규정 위반 과정의 Lead Instructor, 교육규정을 위반한 AHA BLS Instructor이다.
 - (ㄱ) 1차 위반: 1차 경고
 - (ㄴ) 2차 위반: 사안에 따라 AHA BLS Instructor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.
 - (ㄷ) 3차 위반: BLS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AHA BLS Instructor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.

6. 소속 교육생 관리

- 1) 소속 교육생이란 BLS TS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은 사람이며, 교육과정의 합격(PASS), 불합격(FAIL)자 모두를 포함한다.
- 2) 불합격(FAIL)한 교육생이 다른 BLS TS에서 합격(PASS)한 경우는 합격(PASS)한 BLS TS의 교육생이 된다.
- 3) 소속 교육생의 BLS Renewal 기한 3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7.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

- 1) 교육과정은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 과 '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'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- 2)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과 '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'의 교육규정을 준수한다.
- 3)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은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4) 교육기관은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때 마다 수정되는 교육물품을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.
- 5)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은 개설 횟수에 제한이 없다.
- 6) 교육과정은 교육 1달 전에 대한심폐소생협회 홈페이지(www.kacpr.org)를 통하여 공지할 수 있다.
- 7) 교육과정과 교육생에 대한 문서(또는, 전자문서 포함)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문서에는 교육생 인적 사항, 서명지(강사, 교육생), 술기평가지, 필기시험 답안지, Course Roster 원본을 포함한다.
- 8) 교육과정 당일에는 신청자와 참석자가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방법으로 교육생의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.
- 9) 매 과정마다 시험지(Written Examination)를 회수하여 외부에 누출시키지 않아야 한다. 또한, 교육생의 필기/실기 점수를 비밀관리 하여야 한다.

- 10)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은 필기평가와 2가지의 술기평가를 모두 통과하여야 과정에 합격할 수 있으며, 필기평가의 합격기준은 25점 만점에 21점 이상이며, 19점 또는 20점의 경우에는 다른 버전으로 재시험이 1회에 한해 가능하다. 또한 AHA BLS Instructor 과정 입과 기준 필기평가 점수는 23점 이상이다. 단, 필기평가 재시험을 본 교육생은 불가하다.
- 11) 교육과정 후 7일 이내에 TC에 보고서(대한심폐소생협회 양식)를 제출한다.
- 12) 교육과정 합격생이 대한심폐소생협회를 통해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13) 불참 또는 불합격한 교육생에 대한 무료 재교육 가능유무는 교육기관에서 정할 수 있으며, 이는 사전에 교육생에 공지하도록 한다.
- 14) 교육의 질관리를 위해서 상주인력 1인 이상 강사로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.
- 15) 최소 교육 성립은 강사 1인과 학생 2인을 기준으로 한다. 학생과 강사의 비율은 1:2-1:6을 권장한다. 이에 준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TS 실사를 할 수 있다.

8. BLS TS 의 운영정지 및 지정 취소

- 1)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는 BLS TS 현장실사(의료인 교육과정 또는 일반인 교육과정)를 나갈 수 있으며, BLS TS는 현장 실사를 협조한다.
- 2) BLS TS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교육실적이 미비할 경우에는 서면보고서를 대한심폐소생협회로 제출해야 하며, 아래와 같이 제재를 할 수 있다.
 - (ㄱ) 1차 위반: 1차 경고
 - (ㄴ) 2차 위반: 사안에 따라 BLS TS 현장실사 후 BLS TS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.
 - (ㄷ) 3차 위반: BLS TS 실사 후 BLS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BLS TS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(ㄹ) BLS 교육 규정을 1차, 2차 위반시에는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BLS 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교육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
단, 3차 위반시에는 해당 과정을 불인정한다.
- 3) 기본심폐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교육기관(AHA BLS TS)의 경우 '기본소생술(미국심장협회) 과정'을 1년 2회 개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KBLS TS 또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. (단, 각 TS 운영 기준에 부합해야 함)
- 4) 지정 취소된 TS는 2년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.
- 5) TS의 지정을 취소,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보관서류, 소속 강사, 교육생 등의 행정사항을 관리할 TS를 지정하거나 대한심폐소생협회로 이관한다.

9. 기타 진행은 운영매뉴얼을 기준으로 하며 Training Center 인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운영지침을 준수한다.

10. 이 지침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2017.06 AHA BLS 과정 운영지침
 / 2016. 04. 1차 개정
 / 2017. 06. 2차 개정
 / 2018. 04. 3차 개정
 / 2019. 12. 4차 개정